

## 제 2 주차 : 국제환경조약의 기본원칙

### ■ 학습목표

점차 규범화 되어가고 있는 국제환경조약의 기본원칙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인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학습한다.

### ■ 주요 학습내용

1. 국제환경규범 동향
  - (1)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발전
    - 1) 개념
    - 2) 국제환경법의 발전
  - (2) 국제환경법의 특성
  
2. 국제환경조약의 기본원칙
  - (1)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
  - (2) 국제협력의 원칙
  - (3) 사전예방의 원칙
  - (4) 오염자부담의 원칙
  - (5)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의 원칙
  - (6)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 1) 내용
    - 2) 파생원칙

## 학 습 내 용

### 1. 국제환경규범의 동향

#### (1)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발전

##### 1) 개념

환경문제가 “국경을 초월한다”는 인식, 즉 국제공동체의 공동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국제법의 새로운 분야인 국제환경법이 발전되어 왔다. 환경법의 정의와 관련, 일부 법학자들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배타적인 원칙에서 비롯된 법원(source of law)을 가진 환경법체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수의 학자들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구별된 법체계(a distinct body of law)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환경법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국제법 전부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 2) 국제환경법의 발전

###### - 국제환경법의 기원

국내환경보호를 위한 법제정의 역사는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국경을 초월한 환경문제의 대처라는 의미에서 국제환경법의 기원은 19세기 중 체결된 양자간 어업조약들 및 1893년 태평양 물개사건에서의 중재판정에서 찾을 수 있다. 1902년 체결된 “농업에 유용한 조류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관련된 최초의 다자간 국제협약으로 기록되며, 그후 1909년 미국과 캐나다간 국경하천에 관한 협정이 대표적인 국경하천조약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진정한 생태적인 관점에서 체결된 최초의 국제조약은 1933년 체결된 “자연상태의 동식물의 보존에 관한 런던협약”을 들 수 있다.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노력은 1950년대 처음 나타났던 바, 1954년 석유로 인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런던협약”이 주목할 만한 것이며, 1959년 체결된 “남극조약”에서 남극대륙에서의 동식물 보호를 위한 조치를 채택한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단편적인 국제환경조약 체결이외에도 이 기간중 국제환경법의 일부를 구성하는 기본원칙들이 출현 한 바, Trail smelter case의 1941년 중재판정은 “어느 국가도 그 배출가스를 타국의 영토나 그 곳에 거주하는 사

## -국제환경조약-

람들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도록 자국의 영토를 이용하거나, 이용되도록 허용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고, 1949년 Corfu 해협사건에서 ICJ(국제사법재판소)는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권리에 반하여 자신의 영토를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선례들은 초기 국제환경법의 발전을 위한 법적인 기초가 되었다.

### - 국제환경법의 발전

1960년대에 들어 생물권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한 과학적인 경고가 제기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여론의 압력이 증대되고, 각 정부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표명되기 시작하였다. 1968년 유엔이나 일부 지역협력기구들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및 담수보호 등을 위한 지역환경협정 체결이 시작되고,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UN 인간환경회의”는 세계 114개국의 정부 및 비정부간 기구의 참여하에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7개항의 선언, 26개의 원칙 및 109개의 권고사항으로 구성)을 제시함으로써 국제환경법의 본격적인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70년대 초반에는 “습지보호에 관한 Ramsar 협약”, “남극 물개보전을 위한 런던협약” 및 “멸종위기의 종 보호를 위한 워싱턴협약” 등이 채택되었다. 또한 1979년 “야생이동성 동물의 보존에 관한 본 협약”, 1979년 “국경을 넘는 광범위한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환경법은 1982년 “UN 해양법협약”을 통하여 해양환경보전에 속하는 사항을 광범위하게 발전시켰고, 같은 해 채택된 “세계자연유산”은 현재 및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한 자연보존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선포하였다. 1985년에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협약 등이 채택되었으며 지역차원에서도 다양한 환경협약들이 채택되었다.

1992년에 개최된 'UN 환경개발회의(Rio 회의)'에서는 21세기를 향한 정책원칙인 리우선언, 산림의 보전·관리를 위한 원칙선언 및 21세기를 위한 실천계획인 방대한 "Agenda 21(의제21)"을 채택하였다. 이 회의를 전후하여, 1989년 유해폐기물의 교역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1992년 “기후변화협약”, 같은 해에 “생물다양성협약” 등 새로운 국제환경협약이 교섭·체결되었으며, 기존의 각종 환경협약도 그 규정이 보다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렇듯 국제환경법은 기본적으로 70년대에 발전하기 시작하여 아직도 발전단계에 있는 국제규범이다.

## (2) 국제환경법의 특성

환경문제는 다른 영역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 즉, 환경관련 입법을 하는데 있어 자연과학은 물론, 사회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아야 하는 본질적 특성이 있다. 환경법의 법규내용상 특성은 환경법이 soft law라는 점이다. 조약의 형태로 체결된 환경법은 구속력은 있으나, GATT/WTO 협정과 같이 그 이행의 강제성이 강하지 못한 것이 특징이며, 대개 상당한 정치적인 약속(Commitments)의 형태로 체결되어 왔지만, 최근 보다 강제성을 동반한 환경협약의 체결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국제환경법은 해양, 내수, 대기 등 환경의 각 부문을 규제하는 규범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독성화학물질, 폐기물, 지구온난화 등 여러 부문에 영향을 주는 환경문제를 규제하는 규범이 있지만, 최근의 추세는 각 부문을 통합해서 접근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국제환경규범의 가장 큰 특성 중의 하나는 국제기구의 역할이다. 국제기구의 일방행위는 대부분 구속력을 갖지 않는 권고에 해당하는 관계로 형식적으로는 주된 법원(source of law)은 아니나, 실제로 국제사회의 행위에 영향을 주고 관습법형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조약체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보조법원의 역할을 한다. 국제기구의 중요한 특징은 극소수의 국제기구만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를 채택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기구의 일방행위는 대상자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주는 규칙(regulation), 도달해야 할 결과에 있어서만 구속력이 있는 지침(directive), 그밖에 결정, 권고, 의견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환경보호 문제와 관련, UN안전보장이사회, OECD, EU 등의 기구들은 계속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들을 채택하여 왔으며, 그 밖에 지침적 권고, 행동계획, 원칙선언 등은 구속력 없는 규칙의 형태이나, 이들은 궁극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범 작성의 전단계 역할을 함으로서 국제환경법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다.

## 2. 국제환경조약의 기본원칙

### (1)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

국제환경조약상 원칙의 하나로서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은 국가가 자국 관할권 또는 통제하에 있는 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관할권 지역의 환경에 손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국가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의 활동인 한 그것이 국가 자신의 활동인가, 사적인 활동인가는 불문한다. 환경침해의 대상은 단순히 다른 국가의 영토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국가의 관할권도 미치지 않는 공해, 심해저, 우주공간 및 천체, 남극 등과 같은 인류 공동지역도 포함하여 당연히 국가는 이들 지역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규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국제환경협약상의 많은 원칙 중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은 가장 오랜 법규형성의 역사를 가졌다. 따라서 이 원칙은 가장 확고하게 관습법적 지위에 오른 것으로 인정되며 국제 환경법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스톡홀름 환경선언 이전에 채택된 1951년의 “국제식물보호협약”은 국경을 넘어 식물균 및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선언하였다. 또한 1968년의 “아프리카 환경보존협약”도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다른 국가의 자연 자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협의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1972년의 “세계자원 및 문화적유산협약”은 타당사국 영토에 존재하는 유산에 직접·간접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고의적 조치를 취하지 말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1972년의 ‘스톡홀름 환경선언’은 이 원칙의 지평을 넓힌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스톡홀름 선언의 특징은 우선,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 즉, 공해, 우주공간, 천체 및 심해저 등과 같이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까지 환경침해방지 책임을 부과하여 초국경적 상황에서의 적용을 극복한 점이고, 또 오염방지의 책임과 국토이용에 대한 주권적 권한을 대응시켜 무제한적 주권행사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규정형식은 이후 채택된 많은 국제법 문서에 반영되었는데, 예를 들면 “국가의 경제적 권리의 무헌장”, “헬싱키 유럽안정보장 및 협력에 관한 회의 최종결정”, “세계자연헌장”, “제3차 해양법협약”, “아세안 자연 및 자연자원보존협약”, “원거리 초국경 대기오염협약”, 1992년의 “리우 선언” 등이 그것이다.

## (2) 국제협력의 원칙

국제환경협약의 한 원칙으로서의 “국제협력의 원칙(Cooperation Principle)”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선린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국제환경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협력하여야 하는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환경오염의 긴급상황에서 영향이 미칠 다른 국가에 위협상황을 고지할 의무와 조력할 입장에 있는 국가가 긴급상황에 처한 국가에 대한 지원의무, 둘째 국제환경보호를 규제하는 국제법의 준수와 새로운 국제법 발전을 위한 협력의무, 셋째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시행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정보를 제공하여 협의하며, 필요한 경우 의사반영의 기회를 주는 절차적 의무 등이 포함된다.

국제사회에서의 일반적인 선린·협력 의무는 UN헌장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사실 국제 환경보호는 한 국가의 독자적 노력에 의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어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이다. 특히 공기나 물과 같은 오염원의 이동물질들은 정치적 국경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므로 한 국가만의 규제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협력의 의무는 거의 대부분의 국제환경법 문서의 기본정신으로 직접·간접으로 언급되고 있다. “OECD의 초국경의무에 관한 원칙선언”, “유류오염사고시의 공해 상에서의 간섭에 관한 협약”, “핵사고 또는 방사성비상시의 보조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이 이러한 의무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환경보호를 위한 일반적 협력의무로 구체적으로 문서화된 것은 ‘스톡홀름 선언’이다. 한편 ‘리우 선언’에서도 국제협력의 한 형태가 이 분야의 국제법 발전에의 협력임을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국제적 협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문서로는 “헬싱키 안전보장 회의 최종결정”, “국가의 경제적 권리의무 헌장”, “세계자연헌장”, “노르딕환경보호협약”, “아마존협력을 위한 조약” 등을 들 수 있다.

## (3) 사전예방의 원칙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은 건강과 환경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해를 일으키는 활동들이 언제 허용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언제 금지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제시된 활동의 영향에서의 과학적 불확실성에 직면한 정책결정의 문제를 말한다. 즉, 많은 국제적 환경문제에 관한 과학적 불

## -국제환경조약-

확실성에 대한 반응으로, 과학적 확실성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잠재적인 환경적 피해가 사전에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선행적 방법에서 행동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해양오염분야에서 최초로 주장된 예방적 원칙은 현대 환경정책의 가장 현실적인 지침원리로 간주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의 해양오염규제의 전통적인 방법은 해양이 가지는 정화능력에 기초하여 허용되는 투기량을 산출하여 왔다. 예방적 원칙의 지지자는 이같은 방식은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즉, 해양환경에 안전하게 흡수될 수 있는 오염의 양을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과학적 확실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안전하다고 생각한 투척의 양이 장기적으로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투기를 모두 제거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해양환경으로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예방적 원칙을 주장하여 왔다.

예방적 원칙은 환경문제가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포함하였다고 인정된 이래로 더욱 일반적으로 환경적 문제에 대해 적용되었다. 오존층 파괴와 기후 변화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해양 생태계보다 기후학에 대해서 과학적 지식이 더 부족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구온난화와 같은 해양 투기문제가 아닌 문제에서도 그 적용이 진행되고 있지만, 과거 수년간 국제회의에서 예방적 원칙의 어떤 통일적·일반적인 형태를 도출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태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진다. 첫째, 제기된 활동으로부터 환경적 피해의 위험이 제거되거나 감소될 수 없는 범위와 활동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의 심각한 위험이 있으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 일단 이러한 행동들이 허용되면 제기된 활동에 대해서 오염을 금지하고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하고 청정기술과 올바른 관리제도를 통하여 위험을 줄여한 한다는 것이다.

### (4) 오염자비용부담의 원칙

“오염자 비용부담의 원칙(Polluter-Pays-Principle)”을 간단히 정의하자면 오염비용과 그 결과비용을 오염을 야기한 책임이 있는 주체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이 국제사회에 등장하여 발전한 것은 OECD와 유럽공동체(EU)를 통해서이다. 북미와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두 국제기구는 많은 문서들을 통하여 이 원칙을 언급했다. 예를 들어, ‘리우 선언’은 이 원칙에 대하여 “국가 당국은 공공이익에 대한 적절한 고려와 국제무역과 투

## -국제환경조약-

자를 왜곡함이 없이 원칙적으로 오염자가 오염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접근방법을 고려하여 환경비용의 내재화(internalization)와 경제적 수단의 사용을 증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처음 이 원칙을 규정하였던 OECD의 원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좀더 상세한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 “오염방지과, 부족한 환경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국제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의 왜곡을 피하기 위한 통제조치를 위한 비용에 대한 원칙”이라고 규정했다. 이 원칙은 오염자가 공공당국이 환경을 받아들일 만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정한 조치를 수행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염자 비용부담원칙을 이해함에 있어 주의 할 것은 오염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배상하는 원칙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즉 오염자 비용부담원칙은 책임에 관한 원칙이 아니라 오염통제비용의 배분을 위한 원칙이다.

“오염자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유럽공동체 사회 (EC Council)는 “직접으로 환경에 손해를 입힌 자” 또는 “그러한 손해의 조건을 야기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오염자를 밝히는 일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의한 오염, 생활오수에 의한 오염 같은 집단적 오염자의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다. 이러한 경우 유럽공동체 정부가 경제적 효율성 및 행정적 효율성을 고려하고 비용을 자체비용으로 수용할 능력을 고려하여 비용을 배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원칙을 언급하고 있는 국제법 문서들로는 “아세안 자연 및 자연자원보존협약”, “알프스 보호협약”, “UN유럽경제위원회 초국경하천협약”, “발틱해협약” 등을 들 수 있다.

### (5)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의 원칙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의 원칙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은 인류가 공유한 환경에 대한 보호책임을 인류가 공동으로 부담하지만, 구체적인 책임의 정도는 환경과피에 기여한 정도와 국가의 능력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을 언급하고 있는 ‘리우 선언’은 “국가는 지구생태계의 건강과 통합성을 보존·보호 및 재건하기 위하여 세계적 동반자적 정신에서 협력하여야 하고, 지구환경침해에 미친 서로 다른 영향을 고려하여 공동이지만 차별적인 책임을 진다. 선진국은 그들 선진사회가 세계 환경에 그 동안 미친 영향과 그들이 운영하는 기술적·재정적 자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제적으로 추구함에 있어 그들이

## -국제환경조약-

부담한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원칙은 두 가지 내용인데, 환경보호를 위한 공동의 책임이 그 하나이고, 각 국가의 상황, 즉 환경에 그동안 각 국가가 미친 영향과 환경오염을 방지·감소·통제할 수 있는 능력,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염자 비용 부담원칙에서도 기존 환경오염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는 문서들을 언급하였는데, 공동이지만 차별적인 책임의 원칙이 이와 다른 점은 개발도상국의 필요성과 그들의 능력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이다.

이 원칙이 규정된 것은 ‘리우 선언’을 통해서 이지만 이 원칙의 내용은 그 이전의 국제법 문서에서도 규정되어 왔다. “공동책임의 원칙”은 심해저를 규율하는 “제3차 해양법협약”, 지구 생태계보존을 위한 “세계자원 및 문화유산 보호협약”, “생물다양성보존협약” 등에서 규정되고 있고, “차별의 책임”은 좀더 폭넓게 조약과 기타 관행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유해폐기물의 해양투기의 금지에 관한 협약”에는 당사국들이 그들의 과학·기술 및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일정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의 경제적 권리의무헌장”,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협약” 등에서도 이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 (6)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 1) 내용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이 국제환경협약의 한 원칙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별 이론이 없으나, 그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상당히 의견이 갈라져 있으며, 아직 그 의미가 명확한 개념은 아니라고 하겠다. ‘지속가능한 발전원칙’에 대한 논의동향과 개념은 앞에서 다룬바 있어 여기서는 그 내용에 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내용을 구체화함에 있어서는 첫째, 누구를 위하여 개발하고 보존하여야 하는가, 둘째는 무엇을 보존할 것인가, 셋째는 어떻게 개발하고 보존할 것인가 라는 기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누구를 위한 개발과 보전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먼저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지만, 문제는 현세대만을 그 이익주체로 하는가 미래세대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하는가와, 자연자원 및 생태계도 하나의 이익주체로서 인정되어야 하는가 이다. 다음 세대의 필요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위 ‘세대간 평등의 원칙’이라는 이

## -국제환경조약-

름으로 많은 저술과 국제문서들을 통하여 인정되어 가고 있다. 자연 및 생태계에 대한 고려도 많은 문서에서 자연 및 생태계의 이익 주체성에 대한 배려가 주장되고 언급되고 있다. 두번째로 무엇을 보전하여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하여는 보전대상의 논의라고 하겠는데 자연, 자연자원, 생태계 등 그 대상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며, 여기에 자연의 미적 가치와 오락적 가치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세번째로 어떻게 보전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보전대상이 '지속가능'하도록 즉 환경과 경제가 조화롭게 통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논의 의제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인구증가 및 빈곤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들, 해양, 대기, 토양, 생물다양성 등 각종 부분적 환경이슈, 국제환경관련 조직, 법체제 및 자원, 기술이전 이행방안 등의 복잡한 이슈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2) 파생원칙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세대간 평등의 원칙”, “자연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 “환경과 개발의 통합의 원칙” 등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다.

#### - 세대간 평등의 원칙

과학문명의 획기적 발달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구전체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변형시키고, 심지어는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는 힘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 미래세대의 생존에 상당한 위협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류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사용함에 있어 미래세대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가 법적인 의무로 존재하기 위해, ‘스톡홀름 환경선언’은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증진할 엄숙한 책임이 있다”고 선언하였다. ‘세계자연헌장’에서도 현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자연유산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밝히고 이를 위한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고, ‘리우 선언’은 이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스톡홀름 선언에서 선언된 원칙들을 재확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 - 자연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

이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재생능력을 고려하여 그들의 적절한 양적·질적 상태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자연자원 및 환경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톡홀름 선언’에서는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직접적 표현은 없지

## -국제환경조약-

만 “재생가능한 자연자원의 비소진”과 “재생가능한 자연자원을 생산하는 지구의 능력제고” 등을 요구하여 간접적으로 자연자원 및 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세계자연헌장’은 “이용되는 자원은 지속가능한 최대 생산성을 달성하고 유지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생물자원의 재 생산을 위한 자연능력을 초과하여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리우 선언’에서도 이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 - 환경과 개발의 통합의 원칙

경제 및 기타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환경적인 면을 고려하고 환경의무를 입법화하고 적용하며,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경제 및 기타 개발의 필요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1949년에 개최되었던 ‘자원의 이용과 보존에 관한 UN회의’와, 1971년 ‘국제연합총회’에서 언급된 바 있다. 그 다음해에 채택된 ‘스톡홀름 선언’은 인간환경을 보호하고 증진할 필요성에 그들의 개발계획이 양립함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개발계획에 통합되고 조정된 접근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세계자연헌장’도 “자연의 보전이 경제적 및 사회적 개발활동의 계획과 실행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경제개발을 위한 계획수립에 환경체계의 장기적 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리우 선언’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보호는 개발과정에서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분리하여 고려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진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은 이제 국제환경협약상의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제원칙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간다고 볼 수 있다.

## 학 습 정 리

- ▶ 국제환경법의 특성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아야 함
  - soft law : 이행의 강제성이 강하지 못함
  - 국제기구의 역할이 매우 큼
  
- ▶ 국제환경조약의 기본원칙
  -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
  - 국제협력의 원칙
  - 사전예방의 원칙
  - 오염자부담의 원칙
  -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의 원칙
  -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 ▶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 누구를 위하여 개발하고 보존하여야 하는가 : 세대간 평등의 원칙
  - 무엇을 보존할 것인가 : 자연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
  - 어떻게 개발하고 보존할 것인가 : 환경과 개발의 통합의 원칙

## 학 습 문 제

- 국제환경법의 특성을 논하라.
- 국제환경조약의 기본원칙을 논하라.
- 지속가능한 발전원칙의 내용을 논하라.
- 지속가능한 발전원칙에서 파생된 원칙들을 논하라.

## 다음차 예고

다음 시간에는 각론부분으로 생태계, 해양, 폐기물과 관련된 주요 국제환경 조약들에 관하여 학습해 보기로 한다.